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19. 10. 17.(목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최경분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발 의 자: 박 성 원 의원 등 6인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19년 10월 8일
- 회부일자: 2019년 10월 11일

## 3. 제정이유

- 충청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 4. 주요내용

-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정책연구용역 관리원칙(안 제4조)
- 충청북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·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안 제10조)
- 정책연구용역 종합계획 수립(안 제11조)
- 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제출과 선정(안 제12조)
- 정책연구용역과제 변경(안 제13조)
- 정책연구용역 실명제(안 제14조)
-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(안 제15조)
-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·공개·활용·관리(안 제16조 ~ 안 제19조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-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규정하고, 안 제6조에서 부터 안 제10조에 충청북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였으며, 안 제11조에는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 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음
- 또한 안 제12조에 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제출과 선정을 규정하고, 안 제14조에는 정책연구용역 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, 안 제15조에는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점검하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및 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연구용역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-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이 각종 정책개발과 주요현안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선정과 추진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,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,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질 향상과 연구결과의 활용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한 제정이라 판단됨